

심의결과 위안대로가결

의안 번호	회의 차수	회의 일자	제의자
21	12	1986. 5. 1	총재 박성삼

의안

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 일부 개정

의결사항

1.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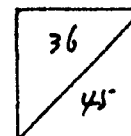
2. 실시일자 : 1986. 5. 1

제의관계
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 7 조 및 제 72 조

제의취지

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 방식하에서 금융기관의 방만한 여신운용 억제 및 자율적인 자금관리 강화유도와 함께 통화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.



<참 고> 관계법규조항 발췌

한 국 은 행 법 제 7 조

① 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- ⑤ (생 략)

한 국 은 행 법 제 72 조

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.

(이 하 생 략)

〈물 임〉

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 일부개정(안)

[illegible]